

#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·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 검 토 보 고

I. 제 출 자 : 이천시장

II. 제출일자 : 2002년 12월 11일 제출, 2002년 12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회부

III. 근거법령 : 이천시 자체적으로 본 조례 개정

## IV. 검토내용

### 1. 제안 이유

- 이천시립 청미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 및 소재지표시와 현실에 맞게 이천시립도서관 관리·운영조례를 정비하여 도서관 관리·운영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 골자

- 명칭 및 소재지 표시(안 제1조제2항 별표1)
  - 이천시립도서관 : 이천시 창전동335-9
  - 이천시립청미도서관 :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371
- 인력과 자료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 자료실과 서고를 통합하여 문헌 정보실로 변경 하며, 주부·아동실을 신설하고, 향토자료실을 시립박물관 신설로 인하여 폐지(안 제15조)
-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직제변경 내용 반영
  - 1998. 10. 14 : 기구축소로 인하여 도서관운영을 독립체제에서 문화공보담당관 관장업무로 변경(안 제8조의 제4항을 삭제)
  - 2001. 3. 9 : 2담당(사서,열람)을 1담당으로 변경 됨에 따라(안 제20조의 제1항중 사서담당주사 삭제)

- 시설 사용료중 프린터 출력료 추가 신설
  - A4 단면 1매 60원(안 제3조 제1항 별표)

### 3. 검토 의견

-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·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천시립 청미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 및 소재지를 안 제1조에서 명시하고, 본 조례 제15조의 각 운영실 중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통합과 폐지하며, 또한, 본 조례 운영상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각 조문상의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관리·운영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